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96호 2019. 9. 17. (화)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204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고시.....2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003호 공시송달 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19-1005호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9
- 정선군 공고 제2019-1006호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1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204호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제2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정 선 군 수

1. 명 칭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나. 설립배경 :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km<sup>2</sup>) 40명 미만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흡.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여 행·재정적 지원 마련 절실

다. 참가현황 : 전국 24개군

라. 규약의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능 등 (제1조 ~ 제4조)
- 임원 및 임기, 회장단 등 (제5조 ~ 제8조)
- 협의회 회의, 의결 등 (제9조 ~ 제15조)
- 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제16조 ~ 제19조)

붙임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1부.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자치단체에 한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 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특례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을 제출한 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실국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별도 지정)이 되고,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장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특례군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

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 납부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가입 현황

단양군, 옹진군,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구례군, 곡성군,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의령군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003호

##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 정 선 군 수

-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업체명)	주 소	통지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이○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1**	19.08.1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8리 일원	※ 참조	200,000원	폐문부재 등

※ 위반내용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 공고기간 : 2019. 09. 16. ~ 2019. 10. 01. (16일간)

##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정선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033-560-2359)에 제출하여 주시고,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정선군청 환경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최고 60개월까지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033-560-2359, fax 033-560-2589)

정선군 공고 제2019-1005호

###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정 선 군 수

#### 1. 제정이유

-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정선군의 여행 상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정선군과 군민, 관광객들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군민·관광객 등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물 관리를 통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SNS를 통하여 군의 관광발전에 기여한 군민, 서포터즈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전 화 : 033 - 560 - 2369

☞ F A X : 033 - 560 - 2593

☞ E-mail : jmkong87@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정선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contents)”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서포터즈(supporters)”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수집활동으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군의 각종 여행콘텐츠(이하 “여행콘텐츠”라 한다)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정개설) ①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관광객·이용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군의 여행·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등과 같다.

1. 정선여행 정보 및 홍보
2. 문화·예술·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서포터즈의 정선여행 콘텐츠
4. 이용자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선여행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한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때
6. 욕설·음란물 등 건전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인 때
7.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저해, 군민권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5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당 활동실적에 대한 군수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축제 및 여행정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여행 소식을 수시로 취재·수집하여 해당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서포터즈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때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개인정보 보호 등에 소홀하여 해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④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지역탐방, 교육 등에 참석한 때에는 해당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 및 여행콘텐츠 제작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취재·수집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행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제작에게 정해진 원고료 지급

## 3.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대행업무 수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군수는 SNS를 통하여 군의 관광발전에 기여한 군민, 서포터즈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정선군 공고 제2019-1006호

###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정 선 군 수

#### 1. 제정이유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 수립에 참여 및 결정하는 방식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주민자치회 지원
- 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협의
- 다.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 반영
- 라. 마을 축제, 기타 교육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영역 주민자치 업무 수행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화 : 033-560-2236
- 팩스 : 033-560-2590
- 이메일 : kms4820@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 ③ 군수는 관할 지역 내 인구·면적 등 고려하여 마을(리 또는 반) 단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갖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대표위원 : 읍·면 대표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주민대표위원 : 읍·면 각 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직능대표위원 :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자문대표위원 :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자치 외부 전문가
  5.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총원의 10퍼센트 이상
-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⑤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

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

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